

(제6-7호)

### 최대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변경 전	최대주주명	서영훈
		소유주식수(주)	122,000주
		소유비율(%)	41.78%
	변경 후	최대주주명	함일덕 외 3인
		소유주식수(주)	130,000주
		소유비율(%)	44.52%
2. 변경사유	주식양수도에 의한 지분율 변동		
3. 지분인수목적	-		
- 인수자금 조달방법	-		
-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	- 없음		
4. 변경일자	2025.11.24		
5. 변경확인일자	2023.12.03		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없음		

#### 【세부변경내역】

성명(법인)명	관계	변경전		변경후		비고
		주식수(주)	지분율(%)	주식수(주)	지분율(%)	
서영훈	변경 전 최대주주	132,000	45.21	122,000	41.78	
함일덕	변경 후 최대주주	90,000	30.82	90,000	30.82	
함욱	변경 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20,000	6.85	20,000	6.85	변경 후 최대주주의 아들
이강숙	변경 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14,000	4.79	14,000	4.79	변경 후 최대주주의 아내
함혁	변경 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6,000	2.05	6,000	2.05	변경 후 최대주주의 아들

#### 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최대주주명”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.
- 주3) “소유주식수”는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를 각각

기재한다. 이 경우 「상법」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(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' 있는 자기주식 포함)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- 주4) “소유비율”은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(「상법」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 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“3. 인수목적(인수자금 조달방법,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 포함)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6) 【세부변경내역】은 변경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및 변경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7) “관계”는 변경전 최대주주,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, 변경전·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“비고”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.  
예시) 최대주주 흥길동의 배우자
- 주8)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(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자본총액 등)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.
- 주9)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